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586,750원과 농특세 5,968,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촌 형인 소외 B은 소외 C과 함께 모텔 운영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1. 3. D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2016. 1. 12. '주식회사 E'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발행가액 1,000원, 보통주 1만 주)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B은 당시 주식회사 F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내부 규정상 별도의 영리 추구 행위를 함에 제약이 있었고, 이에 C의 지인인 소외 G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G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13. 소외 H로부터 [redacted]시 I 대 418.2㎡ 및 그 지상 건물{용도: 숙박시설(명칭 'J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모텔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당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9억 원은 2015. 12.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12. 14. 이 사건 회사('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그 무렵 B과 C은 관계 악화로 인해 더 이상 함께 모텔 운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B은 G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2016. 1. 8.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고(이를 가리켜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2016. 1. 12.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또한 G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주식 전부를 보유하다가 2016. 1. 8.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가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6. 1. 8.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새로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9. 3. 4.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22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8,586,750원, 농어촌특별세 5,968,120원 합계 74,554,870원(각 가산세 포함)의 세액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 36,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주금 전부를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G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소유 · 지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과 취득에 관한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C이 자신의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B과 C 사이의 동업관계가 틀어졌고, 이에 이 사건 주식이전 행위를 통하여, B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결국 B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G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이전을 통해 원고가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은 당초 C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모텔 운영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G이 작성한 각서(갑 제4호증)에는, 동업자인 B과 C이 이 사건 회사 및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K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G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B의 사촌 동생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명의가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및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또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원고가 새로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3, 8, 9, 10, 18, 19, 20, 23, 24, 2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 명의가 G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 실제 소유자는 그 전·후로 여전히 B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원고가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가) B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이 사건 매매잔금은 이 사건 회사가 K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로 인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취득에 관한 부대비용 2억 1,470만 원 또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나) B 명의의 통장 내역(갑 제3호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 전날인 2015. 11. 2.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B은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금 1,000만 원(자본금)을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면서 취득한 부동산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B이 부담한 점, ② C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원고는 C이 B과의 동업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틀어졌고 이 사건 주식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③ 설령 C이 그중 일부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주식이전이 이루어졌고, C은 적어도 그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던 점, ④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모텔 운영 및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리를 하였고 C이 그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전 이후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설립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사실상 B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상당하다.

라) 한편,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전 이후 B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B의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이전 무렵 이 사건 모텔의 영업수지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B은 그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직접 또는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E)의 계좌로 2016년 336,155,000원, 2017년 276,947,000원, 2018년 상반기 289,58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B의 통장에는 그 적요 란에 'A 차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회사에 위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B은 이 사건 주식이전 이후인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대위 변제하였고, 같은 날 1억 5,9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였으며, B이 재직 중이던 F에서 1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이로써 K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여 두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또한 B은 2017. 7. 3.부터 2017. 12. 29.까지 위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계 2억 2,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8. 유상증자(9만 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를 실시하였는데, B은 그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주금(9,000만 원) 전부를 납입하였고, 그 주금 중 7,050만 원을 2017. 12. 29. 위 F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4) 주식 명의자인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총 10만 주)를 소외 L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영업 일체를 L에게 양도하였는데, 사실상 위 법률행위를 B이 수행하였고, 또한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카단50467)을 하였는데 B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위 신청 사건을 수행하고, 이 사건 소송 또한 B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